

『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개정된 「지방재정법」과 동법 시행령에 공시내용, 공시시기, 공시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기존 「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」는 불필요하여 폐지하고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70조에 「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」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하고,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재정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구성(안 제2조)
 - 구성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
 - 위원은 대학교수, 시민단체 대표, 공무원,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시장이 위촉
- 임기(안 제3조)
 -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

○ 운영 및 기능(안 제5조)

-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, 시기
-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

○ 위원회 통합운영(안 제6조)

- 구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

○ 회의(안 제7조)

-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
-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, 사전검토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68조 내지 제72조
-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표준안(행정자치부)
 - 도 예산담당관실 - 1278('06. 3. 2)호와 관련임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법령과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부합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
- 주요 제정내용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,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였음

위원회의 기능은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 및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심의하며, 위원회 운영은 「구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」에서 대행토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임